

의안
번호

249

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보건복지위원회

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2024. 02. 20.

전문위원 김 동 성

1. 제안경위

가. 제 출 자 : 소형준의원 외 17 명

나. 의안번호 : 제249호

다. 제출일자 : 2024. 02. 01.

라. 회부일자 : 2024. 02. 14.

2. 제안이유

- 「노인복지법」 제47조 규정에 따라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주·부식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중식을 제공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경로당에 주·부식비 예산지원의 근거를 신설함.(안 제4조제1항제4호 신설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노인복지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

다. 입법예고

- 기 간 : 2024. 02. 02. ~ 2024. 02. 06.

- 의 견 :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□ 개요

- 본 개정안은 경로당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「노인복지법」 제47조1) 규정에 따라 경로당 중식에 소요되는 주·부식비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.
- 현재 우리 구 경로당은 총 183개소이며, 이 중 구립은 59개소이고 사립은 124개소로 총회원 수는 5,649명이며, 2024년 경로당 지원예산은 14억 300만원이 배정되어 있음.

〈경로당 현황〉

구분	계	주 거 별			면 적 별			등록 회원수
		단독	아파트		33㎡ 미만	33㎡ ~66㎡	66㎡ 이상	
			일반	임대				
계	183	64	100	19	9	45	129	5,649
구립	59	59	-	-	3	25	31	1,961
사립	124	5	100	19	6	20	98	3,688

〈2024년도 경로당 지원예산〉

항 목	지원기준	지원대상	지원방법	지원액
계				14억 300만원
운영비	월46만~50만원(12개월)	전체 등록경로당	면적별 차등	11억 4,000만원
냉방비	월165천원×2개월 (7~8월)	구립,사립단독경로당 임대·150세대 미만(아)경로당	지원 한도 내 실비	1억 6,200만원
난방비	월40만원×5개월(11~3월)			
양곡비	연20kg×8포	전체 등록경로당	-	1억 100만원
	연20kg×2포(구비추가)			

1) 「노인복지법」 제47조(비용의 보조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 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.

- 본 개정안과 관련하여 집행부는 경로당 중식 예산 경우 운영비와 양곡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지만, 경로당별 중식 이용 인원의 차이가 있어 운영비 외에 중식 인원 규모에 따라 추가 지원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.
- 2023년 12월 기준²⁾, 우리구의 전체 인구 43만여 명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8만여 명으로 18.3%를 차지하고 있음. 이는 이미 고령사회³⁾를 넘어선 수치로 우리 구는 곧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. 이에 따라 경로당 이용자의 수도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, 경로당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사업 확대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과거보다 더 높아지고 있음을 비취볼 때 경로당 중식에 소요되는 주·부식비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 됨.

□ 종합의견

- 이상을 종합해 볼 때, 본 개정안은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중식 제공을 위해 경로당 주·부식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,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개정 취지는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며, 노인복지 증진 및 공동체 형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 됨.
- 다만, 비용추계서에 의하면 개정안에 따라 주·부식비를 추가로 보조하게 될 경우 개소당 평균 월 65만원 기준으로 연간 14억 2,700만원⁴⁾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는바, 구체적인 수요인원 조사를 통해 추가 지원에 대한 기준마련이 필요해 보이며,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예산확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 됨

2) 출처 : 서울특별시, 주민등록인구 통계

3) UN은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7% 이상이면 고령화사회(Aging Society), 노인인구가 14% 이상이면 고령사회(Aged Society), 노인인구가 20%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(Super-Aged Society)로 규정하고 있음.

4) 경로당 개소당 평균 월 65만원 기준 x 183개소 x 12개월